

감리지적사례 FSS/2106-11 : 파생상품자산 과소계상

- 쟁점 분야: 파생상품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일: 2020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6.12.31, 2017.1.1~2017.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가 투자목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의 내재파생 상품인 신주인수권의 실질적인 기초자산이 상장주식이므로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평가가 용이(자산평가사 3사 모두 평가 가능)하였고,

회사는 BW 투자금 조기회수 및 주식매각차익 극대화를 위해 신주인수권의 실질적인 대상인 기초주식의 주가에 민감한 상태에서 BW의 신주인수권 평가이익이 크게 발생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최초 입수한 파생상품 외부 평가값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예: ①새로운 평가보고서를 입수하거나, ②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고 해당 사실을 주석공시)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주석공시마저 누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투자목적으로 인수한 BW를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고, 해당 내재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함으로써 파생상품평가이익(당기손익)과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11에 의하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①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②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③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또한, AG80에 의하면, ① 금융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유의적이지 않거나 ② 그 범위 내의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고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동일한 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즉 수준 1 투입변수)이 없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부 당사자에게서 취득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회사는 최초 입수한 신주인수권 외부평가 값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주석공시마저 누락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신주인수권 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기초자산이 상장주식이므로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평가가 용이(자산평가사 3사 모두 평가 가능)하고 파생상품평가 이익이 크게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최초 입수한 파생상품 외부 평가값이 너무 높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관련 주석공시마저 누락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않았다.

5. 시사점

회사는 신주인수권의 실질적인 기초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세력에 BW 형태로 자금을 지원한 결과 거액의 평가차익이 발생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에 잠재적으로 큰 변화가 초래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내부자와 일반 투자자 간의 심각한 정보비대칭 문제를 야기하였다.

감사인은 회계처리가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적절히 표시하는 것 인지를 판단하고 적절한 감사절차를 취하기 위해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목적, 관련된 투자구조, 투자성과 등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